

### 3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· 기숙사에 대한 감면 신설

- 기업 사원의 정주여건 개선·기업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사원에게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
  - (주택) 전용면적 85m<sup>2</sup>이하인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\*(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기재 및 전용면적 85m<sup>2</sup>이하인 호수 부분 한정)
  - (기숙사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라목1)에 따른 일반기숙사\*
    - \*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
  - (토지) 상기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
-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신설·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규정 신설
  -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(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\*)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·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 추징
    - \* 신축의 경우에 한하여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2년으로 규정

#### □ 적용요령

-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12)